

제2주제

시정권고사례를 통해 본  
프라이버시 침해보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김주용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실 심의1팀장, 언론학 박사)





# 시정권고사례를 통해 본 프라이버시 침해보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발제자: 김주용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실 심의1팀장, 언론학 박사)



## ■ 목차

- 1 연구배경
- 2 연구목적
- 3 이론적 배경
- 4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5 연구결과 및 시사점
- 6 제언 - 프라이버시 침해의 억제 및 예방을 위한 개선방향





## 연구배경1

- ✓ 최근의 저널리즘 상황
  - 대형포털 중심의 뉴스 소비 공고화
  - 유튜브, 온라인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이 유력 경쟁사업자로 등장
  - 인터넷신문 1만 개 시대 저널리즘 품질저하 논란
    - 온라인 광고시장 무한 생존경쟁 격화 → ‘주목경쟁’에 따른 ‘클릭 저널리즘’ 심화
    - ⇒ 고품질의 차별화 콘텐츠보다 모방·차용 및 선정성 강화로 대응 ← 프라이버시 침해 유발?
  
- ✓ 인격권 침해원인에 대한 언론인들의 인식조사 결과, 선정적·흥미위주 보도’ 때문이라는 응답 22.7%  
전년대비 4.9%p증가(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 언론인조사)
  -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시정권고가 이루어진 언론보도에 위에서 거론한 최근 저널리즘 상황이나 언론인 인식이 관찰될 경우 개선방향 설정과 관련하여 유용한 시사점 도출 가능
  - ⇒ 프라이버시권 침해 보도의 저널리즘적 특성 파악 필요성 제기

## 연구배경2



- ✓ 개인의 인권 감수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에도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시정권고 지속적인 증가추세  
(※ 최근 10년간 프라이버시 침해관련 시정권고 현황 참조)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언론의 관성적 침해를 방지 내지 방조 시  
프라이버시 보호 감수성 저하, 프라이버시 고유기능 훼손 → 공동체의 건강성 위협  
⇒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 억제·예방을 위한 개선안 마련 필요성 제기
- ✓ 그렇다면 how?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행위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why? 프라이버시 침해사례에서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행위의 관행화된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면 개선방향 설정과 관련하여 유용한 시사점 도출 가능  
⇒ 언론의 프라이버시권 침해행위의 특성 파악 필요성 제기
- ✓ 한편, 만일 프라이버시 침해 보도의 저널리즘적 특성에 따라 언론의 침해 양태가 달리 나타난다면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억제 및 예방을 위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  
⇒ 침해보도의 저널리즘적 특성에 따른 언론의 침해양태의 차이 파악 필요성 제기

※ 최근 10년간 프라이버시권 침해 관련 시정권고 현황

연도	전체 시정권고 건수	프라이버시권 침해건수	비율
2012	259	5	1.9%
2013	289	23	8.0%
2014	302	25	8.3%
2015	438	92	21.0%
2016	912	134	14.7%
2017	1,034	217	21.0%
2018	1,275	230	18.0%
2019	1,288	458	35.6%
2020	935	188	20.1%
2021	1,291	517	40.0%
2022(~10차)	1,074	449	41.8%

연구목적

○ 연구목적1

시정권고가 이루어진 프라이버시 침해보도에 나타난 저널리즘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것이 (언론인들이 인격권 침해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목한) '선정적이고 흥미 위주의 보도' 경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

○ 연구목적2

시정권고 프라이버시 침해사례에서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 행위의 양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관행화된 방식을 파악

○ 연구목적3

프라이버시 침해보도의 저널리즘적 특성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행위의 양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한 저널리즘적 개선과제 파악

궁극적 목적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예방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향 제언



## I 이론적 배경

### 1. 저널리즘 환경의 변화와 언론의 프라이버시 침해 유발요인

#### (1) 언론시장의 현황과 이용자의 뉴스소비행태 변화(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 언론수용자 조사)

##### 가. 뉴스플랫폼으로서 포털의 지배력 공고 → 언론 간 포털 노출경쟁 심화

- 2021년 1주일간 포털을 통한 뉴스이용비율 79.2%(전년대비 3.4%포인트 증가)
- 포털 뉴스홈 초기화면에 올라와 있는 뉴스이용 비율 91.5%

##### 나. 뉴스플랫폼으로서 온라인 동영상플랫폼 부상 → 강력한 경쟁자 등장

- 뉴스나 시사정보를 접하는 주 이용매체로서 온라인 동영상플랫폼 이용 2.8%에서 5.0%로 증가
- 20대는 직전 년도 대비 4.8%포인트, 30대의 경우 두 배 이상(3.1%→6.7%), 60대 이상의 경우 세 배 이상(0.7%에서 2.6%) 증가

##### 다. 영상뉴스 선호경향 심화 → 인터넷신문의 뉴스제시방법 변화

- 텔레비전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같은 영상매체를 통한 뉴스이용률 58.9%



미디어시장에서 '주목경쟁' 격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 제작 유혹에 상시 노출



## I 이론적 배경

### 1. 저널리즘 환경의 변화와 언론의 프라이버시 침해 유발요인

#### (2) 저널리즘 환경변화에 대한 언론의 대응

##### 가. 권위지의 대중지(popular or tabloid) 따라하기

- 타블로이드(tabloid): '추잡하고 선정적이며, 자극적인 흥미위주의 보도'
- 모바일 포털 저널리즘에서 타블로이드화(tabloidization)가 진행 중
- 포털에서 전통적 의미의 타블로이드와 권위지(quality press)간 경계 모호(김창숙·이나연, 2022)

##### 나. '읽는 뉴스'에서 '보고 듣는 뉴스'로 시각정보 강화

- 많은 인터넷신문이 텍스트 위주 전달방식에서 탈피, 직접 제작한 유튜브 동영상을 매개·제공하거나, 유튜브, 온라인커뮤니티, 또 개인 소셜미디어상의 동영상이나 사진을 링크 또는 무단 인용하여 트래픽 유도

##### 다. 여성뉴스 강화

- '여성뉴스' (즉각적인 심리적 보상을 목표로 흥미우선의 뉴스가치를 추구하는 사적영역 출처의 정보)가 54%
- 조선닷컴의 뉴스 조회수와 뉴스의 여성화 및 선정성 정도 간 관계 검증결과  
→ 여성기사 여부 및 제목 선정성 유무의 조회수에 대한 영향 확인(최영·박창신, 2009)



## I 이론적 배경

### 2.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및 유형

#### 가.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 Prosser(1960)는 프라이버시를 '사적영역에 대한 침범', '사적사항의 공표', '왜곡된 공표', '성명 혹은 동일성에 대한 전용'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체계화
- 김재형(1998)은 프라이버시를 인격권의 하위개념으로 파악하고, 인격권에는 명예권 이외에 프라이버시권이 있으며, 후자에 초상권, 성명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포함시켜 논의

#### 나. 프라이버시권 개념의 확장

- 대법원은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판시(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프라이버시권의 일부로 파악
- 타자의 관여로부터 외부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삶의 사적영역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권영준, 2017)

#### 다. 프라이버시권의 유형

- 헌법에 명시된 사생활의 비밀 및 통신의 비밀을 비롯, 개별적 인격권인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그리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그 피침해법적으로 하는 개념

## I 이론적 배경



### 3. 언론보도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법성 판단기준

#### (1) 이익형량의 원칙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법성 여부는 침해이익(정보이익)과 피해이익(보호이익) 간의 비교형량을 통해 판단  
소유권과 같은 권리와 달리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모든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배분과 절충이 불가피함  
(권영준, 2017)

※ 비교형량시 원칙적인 판단요소(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침해행위 영역 고려요소	피해이익 영역 고려요소
침해이익의 내용 및 중대성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 및 효과성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침해행위의 보충성 및 긴급성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정도
침해방법의 상당성	



## I 이론적 배경

### 3. 언론보도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법성 판단기준

#### (2) 위법성 조각사유

##### 가. 언론중재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제5조 제2항)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  
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아니함

##### 나. 사생활의 비밀 침해사항의 위법성 조각사유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그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 위법  
성이 조각될 수 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 I 이론적 배경



### 3. 언론보도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법성 판단기준

#### (3) ‘공중의 정당한 관심대상’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 가. 보호대상 인격영역의 특성(Wenzel의 인격영역론)

- 인격영역론은 인격의 영역에 따라 언론의 취재나 보도의 허용 여부 및 취급 정도가 달라진다는 이론(박용상, 2008)  
내밀영역(Intimsphäre), 비밀영역(Geheimsphäre), 사사(私事)적 영역(Privatsphäre), 그리고  
사회적 영역(Sozialsphäre)과 공개적 영역(Öffentlichkeitssphäre) 등 다섯 가지 인격영역으로 구분
- 보호이익(피해이익)의 내용과 중대성은 보호영역의 특성에 좌우(권영준, 2017)
- 내밀영역에 가까울수록 공중의 정당한 관심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짐



## I 이론적 배경

### 3. 언론보도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법성 판단기준

#### (3) '공중의 정당한 관심대상' 여부판단 시 고려사항

##### 나. 피해자의 인적특성

-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특성, 즉 피해자가 공인 내지 공적인물인지 혹은 사인인지의 여부
- 공인 내지 공적인물에 가까울수록 정당한 관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짐
- 인적특성은 인격영역 중 특히 사사적 영역의 공개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인적특성 단독만으로는 역할이 제한적임  
즉, 공적인물 내지 공인의 사사적 영역에 대한 공개범위는 사인의 그것보다 비교적 넓다고 할 수 있지만 공적인물이라 하더라도 내밀 내지 비밀영역의 경우, 공중의 정당한 관심대상이 되기 어려움



## I 이론적 배경

### 3. 언론보도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법성 판단기준

#### (4) 실무적 판단기준

- 제1준거    공중의 정당한 관심대상인지 여부 검토  
← 피침해 인격영역, 피해자의 인적특성, 공적토론 기여여부 등에 대한 평가
- 제2준거    정보(보도)이익의 중대성 및 가치의 크기 vs. 프라이버시 보호이익의 중대성 및 가치의 크기 비교평가  
← 비방목적 내지 단순 모욕주기 목적의 경우 정보(보도)이익 부정
- 제3준거    표현내용 및 표현방법상의 상당성 존부 검토  
← 정당한 관심대상이며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것은 아닌지 등 평가



## I 연구문제 1

○ 시정권고사례에 나타난 프라이버시 침해보도의 저널리즘적 특성은 무엇인가?

- ✓ 침해사안의 행위내용상의 속성(행위속성)은 어떠한가?
- ✓ 기사제목의 특성(제목표현 선정성)은 어떠한가?
- ✓ 기사본문 제시방법(시각정보 차용방법)은 어떠한가?
- ✓ 기사의 정보원(SNS·유튜브·온라인커뮤니티 출처여부 포함)은 어떠한가?
- ✓ 보도대상(피해자)의 인적특성(침해대상자의 특성)은 어떠한가?

## I 연구문제 2



○ 시정권고사례에 나타난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양태는 어떠한가?

- ✓ 피침해법익의 유형(프라이버시 침해유형)은 어떠한가?
- ✓ 피침해법익 유형별 구체적인 침해태양은 어떠한가?
  - 사생활비밀 침해의 경우 침해행위 태양, 피침해인격 영역
  - 통신비밀 침해의 경우 침해행위 태양, 통신내용 출처, 피침해인격 영역
  - 초상권 침해의 경우 침해행위 태양, 초상출처, 초상사용 맥락
- ✓ 피해자의 인적특성(침해대상자의 특성)은 어떠한가?
  - 공적인물의 경우 그 유형
  - 사인의 특성(공적인물과 관계)
- ✓ 피해자에 대한 비식별·익명처리 여부 및 정도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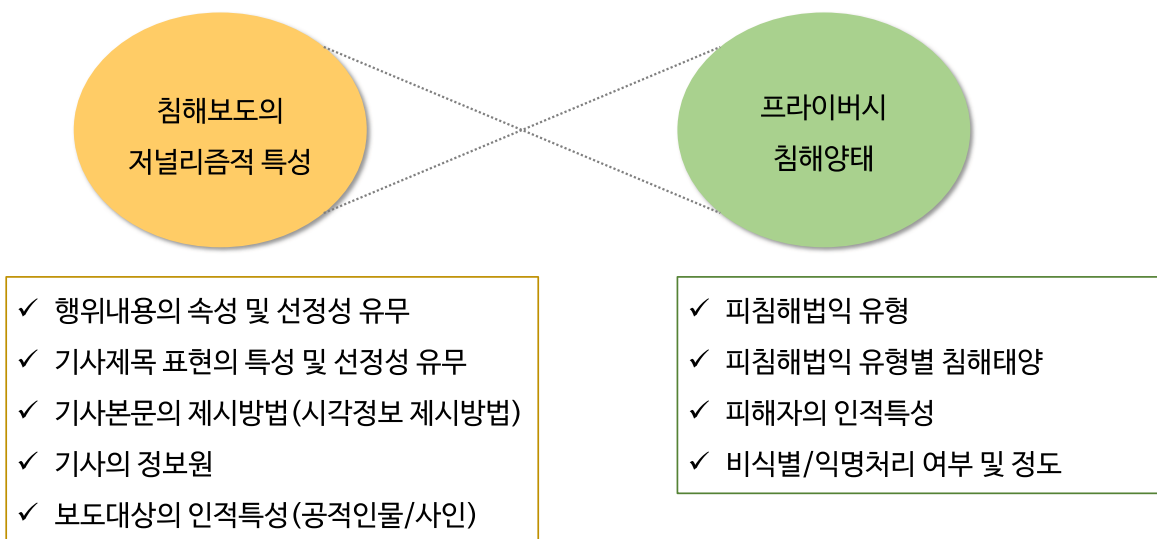


## 연구문제 3

○ 침해보도의 저널리즘적 특성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양태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 침해보도의 행위속성 선정성 유무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양태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 피침해법의 유형상의 차이 및 피침해 인격영역상의 차이
- ✓ 침해보도의 정보원 특성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양태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 피침해법의 유형상의 차이 및 피침해 인격영역상의 차이
- ✓ 보도대상(피해자)의 인적특성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양태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 피침해법의 유형상의 차이 및 피침해 인격영역상의 차이

## 연구 개관





## 연구방법1 - 분석대상

-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해 시정권고결정이 이루어진 사례 중 2020년부터 2022년 10월말까지 프라이버시 침해관련 시정권고사례 총 1,154건 중 대표안건 188건을 대상으로 함
- 대표안건이란? 특정사건과 관련해 문제가 된 안건들 중 시정권고 심의기준의 위반형태나 법익침해 방법이 유사 안건들을 가장 잘 대표하고 있는 안건으로 선정된 안건
- 보다 다양한 사안 내지 사건관련 보도가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연구목적에 더 부합한다는 점 등을 고려, 대표안건을 분석대상으로 함

연도	전체 시정권고건수	프라이버시 침해관련 결정건수	프라이버시 침해관련 결정건수 중 대표사례 건수
2020년	935	188	44
2021년	1,291	517	73
2022년	1,074	449	71
합계	3,300	1,154	188

## 연구방법2 - 분석항목



### 1) 프라이버시 침해보도의 특성

#### 가. 프라이버시 침해사안의 행위내용상 속성

①음주 ②마약 ③성·불륜 ④갑질 ⑤패륜(존속살해등) ⑥폭력(데이트·아동폭력 포함) ⑦이혼·파경 ⑧기타 ⑨해당사항 없음

#### 나. 기사제목 표현특성(제목 선정성)

①감정·욕망자극 ②성적관심유발 ③강렬한 수식어 ④특정인·특정단체 강력 비하·칭송 ⑤군사·재난용어 사용  
⑥감정적 표현사용 ⑦의성·의태어, 느낌·물음표 등 사용 감정적 반응유도 ⑧기타 ⑨해당사항 없음

#### 다. 기사제목 표현특성(제목 속보성)

①[단독] 혹은 [속보] 표시 있음 ②없음

#### 라. 기사본문 제시방법

①온라인커뮤니티 사진·게시글 갈무리 ②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 사진·메시지 갈무리 ③서신·휴대폰 문자메시지 갈무리  
④유튜브 등 동영상 링크(갈무리 포함) ⑤방송법상 방송 화면 갈무리 ⑥직접촬영사진 게시 ⑨해당사항 없음

#### 마. 프라이버시 침해부분의 정보원(source) (주된 정보원 기준)

①온라인커뮤니티 ②소셜미디어 ③유튜브 ④타언론 ⑤공공기관 민원사이트(국민신문고 등)  
⑥공적기관(지자체, 소방서 등) ⑦기관·단체의 공식SNS 또는 홈페이지 ⑧직접취재(사건 관계자 등) ⑨출처불명



2) 프라이버시 침해행위의 양태

가. 피침해법의 유형 (다중응답)

- 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② 통신의 비밀과 자유 ③ 초상권 ④ 성명권 ⑤ 음성권 ⑥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⑦ 기타

나. 피해자의 인적 특성

- ① 공적인물 ② 사인

다. 공적인물의 경우, 공적인물의 유형

- ① 정치인(공직후보자 포함) ② 전문인 ③ 공직자 ④ 연예인 ⑤ 스포츠인 ⑥ 신상공개범죄자(악인) ⑦ 기타 공적인물

라. 사인인 경우, 기사에 거론된 공적인물과의 관계

- ① 공적인물의 가족(미성년자 제외) ② 공적인물의 미성년 가족 ③ 공적인물의 지인 ④ 기타 ⑤ 해당사항 없음

마. 피해자에 대한 익명 및 비식별 처리여부

- ① 처리 없음 ② 지인이면 식별 또는 추지가능 ③ 기타



바. 사생활침해의 경우 침해행위의 태양(주된 침해행위 태양기준)

- ① 신원공개(성명공개 제외) ② 사적영역 공개 ③ 인격상 왜곡 ④ 사적공간 공개(촬영공포) ⑤ 기타

사. 사생활침해 중 사적영역 공개의 경우 피침해 인격영역(다중응답)

- ① 내밀영역 공개 ② 비밀영역 공개 ③ 사사적 영역공개 ④ 사회적 영역 등 공개

아. 통신비밀 침해의 경우 침해행위의 태양

- ① 대화당사자 일방(번호·대리인 포함)의 통신내용 폭로 공개 ② 대화당사자 비공개 통신내용 입수 공개 ③ 수사 및 재판기록 재구성

자. 통신비밀 침해의 경우 통신내용의 출처

- ① 개인간 소셜미디어 메시지 또는 휴대폰 문자 ② 수기편지 또는 E-mail ③ 기타

차. 통신비밀 침해의 경우 피침해 인격영역(다중응답)

- ① 내밀영역 공개 ② 비밀영역 공개 ③ 사사적 영역 공개 ④ 사회적 영역 등 공개

카. 초상권 침해의 경우 침해행위의 태양

- ① 공적인물과 함께 있는 가족 초상공개 ② 피해당사자의 과거 모습 공개 ③ 피해당사자의 사건 당시 모습공개 ④ 공적인물과 동석중인 지인 또는 주변인 초상공개 ⑤ 재난·재해사건의 피해자 초상공개 ⑥ 기타



## 연구방법2 - 분석항목

### 타. 초상권 침해의 경우 초상의 출처

- ①인스타그램 등 SNS ②과거 방송출연 ③타 언론보도(과거방송출연 제외) ④온라인커뮤니티 ⑤유튜브  
⑥공적기관(지자체, 소방서 등) 제공 ⑦직접촬영 ⑧기관·단체의 공식SNS 또는 홈페이지 ⑨출처불명

### 파. 초상권 침해의 경우 초상 사용맥락

- ①부정적 맥락 사용 ②부정적 맥락 무관

### 하. 성명권 침해의 경우 성명 사용맥락

- ①부정적 맥락 사용 ②부정적 맥락 무관

### 거. 음성권 침해의 경우 성명 사용맥락

- ①부정적 맥락 사용 ②부정적 맥락 무관

## 연구방법3 - 분석방법

- 수집된 188건의 시정권고결정서를 위 분석항목에 따라
- 코딩한 후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

## 연구결과1 - 침해보도의 저널리즘적 특성



※ 주요분석 사항

침해사안의 행위내용상 속성  
(행위속성)

기사제목의 특성  
(제목표현 선정성)

기사본문 제시방법  
(시각정보 제시방법)

정보원 특성  
(SNS·유튜브·온라인커뮤니티  
출처 여부)

피해자의 인적특성  
(공적인물/사인)

SNS·유튜브·온라인커뮤니티  
정보원 여부에 따른  
행위내용속성 및 제목표현의  
선정성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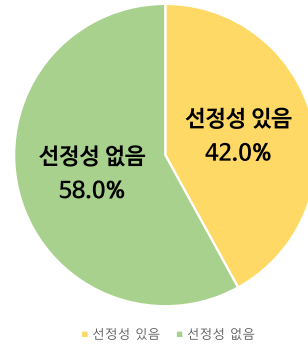
## 연구결과1 - 침해보도의 저널리즘적 특성

### (1) 침해사안의 행위내용상 속성

- 침해보도의 행위속성이 선정성이 있는 경우 42.0%
- 선정적 행위속성 중에는 성·불륜을 다룬 경우가 가장 많음, 흥미위주의 선정적 사안이 아닌 경우 58.0%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음주	2	1.1	1.1
성/불륜	42	22.3	23.4
갑질	4	2.1	25.5
패륜	3	1.6	27.1
폭력	10	5.3	32.4
이혼/파경	18	9.6	42.0
해당사항 없음	109	58.0	100.0
합계	188	100.0	

※ 행위내용상 속성의 선정성 유무



## 연구결과1 - 침해보도의 저널리즘적 특성



### (2) 기사제목 표현상 특성

- 선정주의적인 제목을 동반하는 경우보다 그러하지 않는 경우가 2배 이상 많음
- 선정주의적인 제목을 사용한 경우 중에서는 성적관심을 유발하는 제목 13.8%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는 제목 5.9%,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를 강력하게 비하하는 경우 5.3% 등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성적관심유발	26	13.8	13.8
강렬한 수식어	2	1.1	14.9
특정인등 강력비하	10	5.3	20.2
군사/재난용어 사용	3	1.6	21.8
감정적 표현 사용	9	4.8	26.6
의성어등 감정반응유도	11	5.9	32.4
해당사항 없음	127	67.6	100.0
합계	188	100.0	



## 연구결과1 - 침해보도의 저널리즘적 특성

### (3) 기사본문의 뉴스제시 방법

- 침해보도의 81.9%가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그리고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있는 ‘시각적’ 정보들을 관행적으로 사용  
⇒ 이용자의 뉴스소비방식의 변화, 즉 이른바 ‘읽는 뉴스’에서 ‘보는 뉴스’ 또는 ‘듣는 뉴스’로의 변화가 프라이버시 침해현상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온라인커뮤니티 사진/게시글 갈무리	20	10.6	10.6
소셜미디어 사진/메시지 갈무리	48	25.5	36.2
서신/휴대폰 문자메시지 갈무리	17	9.0	45.2
유튜브 등 동영상 링크/갈무리	36	19.1	64.4
방송화면 갈무리	19	10.1	74.5
직접촬영 사진게시	14	7.4	81.9
해당사항 없음	34	18.1	100.0
합계	188	100.0	

## 연구결과1 - 침해보도의 저널리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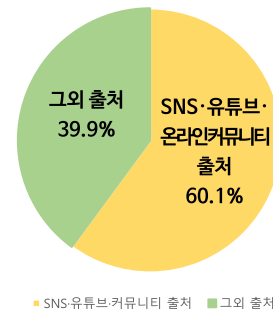
### (4) 침해보도의 정보원

-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그리고 온라인커뮤니티(이하 SNS·유튜브·온라인커뮤니티) 정보원이 전체 정보원 중 60.1%(113건) 차지

⇒ SNS·유튜브·온라인커뮤니티에 게시되는 정보가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온라인커뮤니티	28	14.9	14.9
소셜미디어	50	26.6	41.5
유튜브	35	18.6	60.1
타언론	24	12.8	72.9
공적기관	22	11.7	84.6
직접취재	24	12.8	97.3
기타	5	2.7	100.0
합계	188	100.0	

※ SNS·유튜브·온라인커뮤니티 정보원 여부





(5) SNS·유튜브·온라인커뮤니티 정보원 여부에 따른 침해보도의 특성

가. 행위내용상 속성의 선정성 유무 차이(SNS·유튜브·온라인커뮤니티 출처 정보원 vs. 그 외 정보원)

- 전자가 후자보다 기사의 행위속성에 선정성이 있는 경우가 더 많음
  - ⇒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그리고 온라인커뮤니티를 정보원으로 하는 침해보도의 경우 성이나 불륜 등과 관계된 행위속성을 더 많이 다루고 있음을 의미

구분	행위속성 선정성 유무		전체
	선정성 있음	선정성 없음	
SNS·유튜브·온라인커뮤니티 정보원	56	57	113
행위속성 선정성 여부 중 %	70.9%	52.3%	60.1%
그 외 정보원	23	52	75
행위속성 선정성 여부 중 %	29.1%	47.7%	39.9%
전체	79	109	188
행위속성 선정성 유무 중 %	100.0%	100.0%	100.0%

$\chi^2=6.603$ ,  $df=1$ ,  $p(=.010)<.05$



나. 기사제목 표현상의 선정성 유무의 차이(SNS·유튜브·온라인커뮤니티 출처 정보원 vs. 그 외 정보원)

- 전자가 후자보다 기사제목에 선정적 표현이 포함된 경우가 더 많음
  - ⇒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그리고 온라인커뮤니티를 정보원으로 하는 침해보도의 경우 성적 관심을 유발하는 표현이나 감정적 반응 유도표현을 기사제목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

구분	기사제목 선정성 유무		전체
	선정성 있음	선정성 없음	
SNS·유튜브·온라인커뮤니티 정보원	46	67	113
기사제목 선정성 여부 중 %	75.4%	52.8%	60.1%
그 외 정보원	15	60	75
기사제목 선정성 여부 중 %	24.6%	47.2%	39.9%
전체	61	127	188
기사제목 선정성 유무 중 %	100.0%	100.0%	100.0%

$\chi^2=8.819$ ,  $df=1$ ,  $p(=.003)<.01$

## 연구결과1 - 침해보도의 저널리즘적 특성

2022 언론중재위원회 정책토론회



### (6) 피해자의 인적특성

- 사인이 공적인물에 비해 4배 이상

⇒ 사인이 공적인물에 비해 프라이버시 침해보도에 더 자주 노출되고 있음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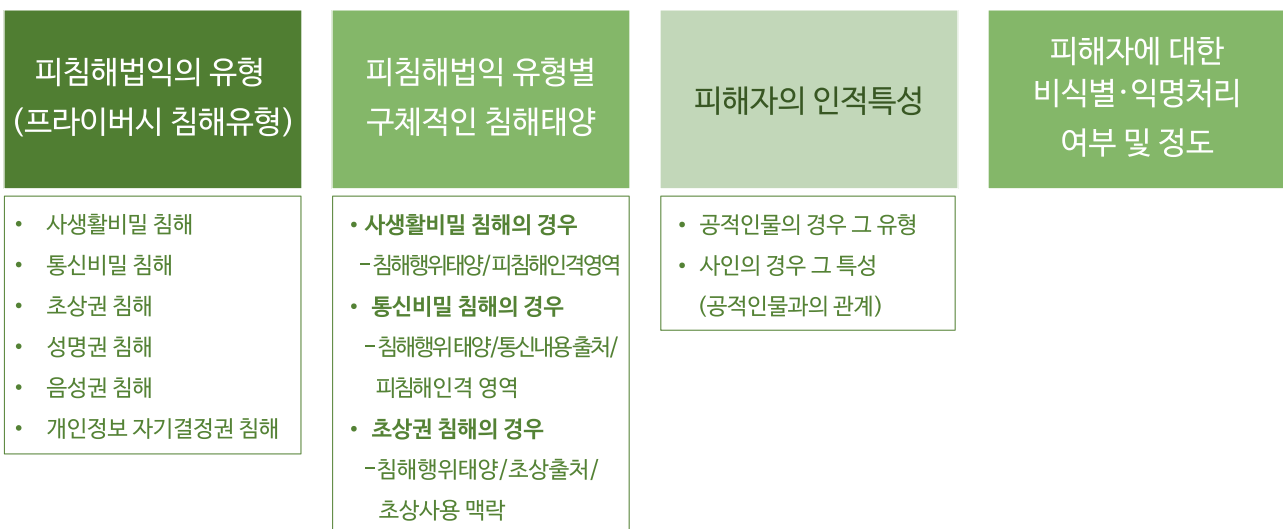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공적 인물	37	19.7	19.7
사인	151	80.3	100.0
합계	188	100.0	

## 연구결과2 -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행위의 태양

2022 언론중재위원회 정책토론회



### ※ 주요분석 사항





## 연구결과2 -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행위의 태양

### (1) 피침해법의 유형

- 초상권 침해, 사생활비밀 침해, 성명권 침해 순서로 많음
- 세 유형 합산 시 피침해법 유형의 82.9% 차지 ⇒ 언론보도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이들 세 유형에 집중

구분	다중 응답		케이스 퍼센트 (188건 기준)
	빈도	퍼센트	
사생활비밀	64	26.7%	34.0%
통신비밀	22	9.2%	11.7%
초상권	90	37.5%	47.9%
성명권	45	18.8%	23.9%
음성권	3	1.3%	1.6%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16	6.7%	8.5%
합계	240	100.0%	127.7%



## 연구결과2 -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행위의 태양

### (2) 피침해법의 유형별 구체적인 침해태양

#### 가. 사생활비밀 침해사례의 침해태양

- 사생활비밀 침해 중에는 '사적영역 공개'의 경우가 대부분(82.8%) 차지
- 그 외 개인의 사적공간 촬영·공표 사례, 당사자의 신원을 공개한 사례, 인격상을 왜곡한 사례 등이 일부 있음
- 사적영역 공개 중에는 내밀한 사적영역 공개가 절반 이상(53.2%)임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신원공개	4	6.3	6.3
사적영역 공개	53	82.8	89.1
인격상 왜곡	2	3.1	92.2
사적공간 촬영공개	5	7.8	100.0
합계	64	100.0	

구분	다중 응답		케이스 퍼센트 (53건 기준)
	빈도	퍼센트	
사생활 내밀영역 공개	41	53.2%	77.4%
사생활 사사적 영역 공개	36	46.8%	67.9%
합계	77	100.0%	145.3%



## 연구결과2 -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행위의 태양

### (2) 피침해법의 유형별 구체적인 침해태양

#### 나. 통신비밀 침해사례의 침해태양

- 당사자 일방의 폭로를 여과 없이 공개한 경우가 대부분(81.8%)
-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은 내용을 입수하여 공개한 경우도 4건 있음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당사자 일방의 폭로 공개	18	81.8	81.8
당사자 비공개 내용 입수공개	4	18.2	100.0
합계	22	100.0	



## 연구결과2 -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행위의 태양

### (2) 피침해법의 유형별 구체적인 침해태양

#### 나. 통신비밀 침해사례의 침해태양

- 통신내용의 출처는 개인간 소셜미디어나 휴대폰 메시지인 경우가 대부분(77.3%)임  
그 외 수기편지나 E-mail 공개한 경우도 있음
- 피침해 인격영역은 내밀영역보다 사사적영역 공개가 더 많음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소셜미디어/ 휴대폰 메시지	17	77.3	77.3
수기편지/E-mail	5	22.7	100.0
합계	22	100.0	

구분	다중 응답		케이스 퍼센트 (22건 기준)
	빈도	퍼센트	
통신 내밀영역 공개	10	37.0%	45.5%
통신 사사적 영역 공개	17	63.0%	77.3%
합계	27	100.0%	122.7%



## I 연구결과2 -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행위의 태양

### (2) 피침해법익 유형별 구체적인 침해태양

#### 다. 초상권침해 사례의 침해태양

- 공적인물과 함께 있는 사인인 가족의 초상을 공개한 경우가 가장 많음(40.0%)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공적인물과 동석중인 가족 초상 공개	36	40.0	40.0
과거(활동)모습 공개	26	28.9	68.9
논란 당시 모습 공개	19	21.1	90.0
공적인물과 동석중인 지인초상 공개	4	4.4	94.4
재난/재해사건 피해자 초상공개	4	4.4	98.9
기타	1	1.1	100.0
합계	90	100.0	



## I 연구결과2 -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행위의 태양

### (2) 피침해법익 유형별 구체적인 침해태양

#### 다. 초상권침해 사례의 침해태양

- 초상의 출처로는 개인 소셜미디어인 경우가 35건(38.9%)으로 가장 많음
- 그 외 유튜브인 경우가 15.6%, 온라인커뮤니티인 경우가 12.2%임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소셜미디어	35	38.9	38.9
과거 방송출연	8	8.9	47.8
타 언론보도(방송제외)	7	7.8	55.6
온라인커뮤니티	11	12.2	67.8
유튜브	14	15.6	83.3
공적기관	7	7.8	91.1
직접 촬영	4	4.4	95.6
기타	4	4.4	100.0
합계	90	100.0	



## I 연구결과2 -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행위의 태양

### (2) 피침해법의 유형별 구체적인 침해태양

#### 다. 초상권침해 사례의 침해태양

- 문제가 된 초상의 97.8%는 사회적 평판 저하 등 부정적 맥락에서 사용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부정적 맥락 사용	88	97.8	97.8
부정적 맥락 무관	2	2.2	100.0
합계	90	100.0	



## I 연구결과2 -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행위의 태양

### (3) 피해자의 인적특성별 침해태양

- 공적인물이 19.7%, 사인이 80.3%를 차지, 사인이 공적인물의 4배 이상
- 공적인물의 경우, 연예인이 40.5%로 가장 많음
- 그 외 기타 공적인물, 스포츠인, 신상공개 범죄자 등의 순서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정치인/공직후보자	1	2.7	2.7
전문인	1	2.7	5.4
연예인	15	40.5	45.9
스포츠인	5	13.5	59.5
신상공개 범죄자(악인)	4	10.8	70.3
기타 공적인물	11	29.7	100.0
합계	37	100.0	



(3) 피해자의 인적특성별 침해태양

- 사인의 경우, 공적인물의 가족이 절반이상(50.3%)

이중에는 미성년자녀가 16.6% 포함되어 있음. 공적인물과 무관한 경우는 43.0%

⇒ 공적 인물의 가족 등 주변인물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언론의 인식제고 필요성 제기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공적인물의 성년가족	51	33.8	33.8
공적인물의 미성년가족	25	16.6	50.3
공적인물의 지인	10	6.6	57.0
해당사항 없음	65	43.0	100.0
합계	151	100.0	



(4) 피해자에 대한 비식별·익명처리 여부 및 정도

- 비식별·익명처리가 없는 경우가 81.4%로 대부분 차지
- 나머지는 주변지인의 경우 식별·추지 가능

⇒ 프라이버시 위법성조각 법리에 대한 언론의 이해부족 가능성 시사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비식별·익명처리 없음	153	81.4	81.4
지인이면 식별/추지 가능	35	18.6	100.0
합계	188	100.0	

### 연구결과3 - 침해보도의 저널리즘적 특성에 따른 침해행위의 양태차이

2022 언론중재위원회 정책토론회



※ 주요분석 사항

#### 침해보도의 행위속성 선정성 유무별 프라이버시 침해양태

- 피침해법의 유형상의 차이/피침해 인격영역상의 차이

#### 침해보도의 정보원별 (SNS·유튜브·온라인커뮤니티 정보원 여부별 포함) 프라이버시 침해양태

- 피침해법의 유형상의 차이/피침해 인격영역상의 차이

#### 보도대상자(피해자)의 인적특성별 프라이버시 침해양태

- 피침해법의 유형상의 차이/피침해 인격영역상의 차이

### 연구결과3 - 침해보도의 저널리즘적 특성에 따른 침해행위의 양태차이

2022 언론중재위원회 정책토론회



#### (1) 행위속성 선정성 유무별 프라이버시 침해양태

##### 가. 행위속성 선정성 유무별 피침해법의 유형상의 차이

- 사생활비밀이나 통신비밀 침해 유형의 경우, 침해보도의 행위속성에 선정성이 있을 때 그 빈도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이와 달리 초상권이나 성명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유형의 경우, 침해보도의 행위속성에 선정성이 없을 때

오히려 약 2배(초상권 침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내지 3배(성명권 침해) 이상 그 빈도가 높음

⇒ 사생활비밀이나 통신비밀 유형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언론의 선정적이고 흥미위주의 보도 경향과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음. 하지만 초상권이나 음성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의 경우 이러한 보도경향과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

구분	피침해법의 유형(다중응답)						케이스 합계
	사생활비밀	통신비밀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위속성 선정성 있음	44	15	31	11	2	5	79
행위속성 선정성 없음	20	7	59	34	1	11	109
합계	64	22	90	45	3	16	188



### 연구결과3 - 침해보도의 저널리즘적 특성에 따른 침해행위의 양태차이

#### (1) 행위속성 선정성 유무별 프라이버시 침해양태

##### 나. 행위속성 선정성 유무별 피침해 인격영역

- 피침해 인격영역 중 내밀영역에 대한 침해의 경우 행위속성에 선정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사생활비밀 침해의 경우 4배 이상, 통신비밀 침해의 경우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침해보도의 행위속성이 선정적인 경우 내밀영역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 확인

구분	사생활비밀 피침해 인격영역 (다중응답)		통신비밀 피침해 인격영역 (다중응답)	
	내밀 영역공개	사사적 영역공개	내밀 영역공개	사사적 영역공개
행위속성 선정성 있음	33	23	10	10
행위속성 선정성 없음	8	13	0	7
합계	41	36	10	17

### 연구결과3 - 침해보도의 저널리즘적 특성에 따른 침해행위의 양태차이



#### (2) 정보원별 프라이버시 침해양태

##### 가. 정보원별 피침해법의 유형상의 차이

- 사생활비밀 침해유형의 경우 유튜브가, 통신비밀 침해와 초상권 침해의 경우 소셜미디어가, 성명권 침해의 경우 타 언론보도가, 각각 가장 빈도가 높은 정보원인 것으로 나타남

구분	피침해법의 유형(다중응답)						케이스 합계
	사생활비밀	통신비밀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온라인커뮤니티	12	5	11	4	2	6	28
소셜미디어	9	10	35	7	0	0	50
유튜브	18	5	14	7	1	2	35
타언론	7	0	14	10	0	3	24
공적기관	6	1	7	9	0	2	22
직접취재	11	1	5	6	0	3	24
기타	1	0	4	2	0	0	5
합계	64	22	90	45	3	16	188



(2) 정보원별 프라이버시 침해양태

나. SNS·유튜브·온라인커뮤니티 정보원 여부별 피침해법의 유형상의 차이

- 사생활비밀이나 성명권 침해유형 등의 경우 차이가 분명하지 않음. 그러나 초상권 침해유형의 경우 SNS·유튜브·온라인커뮤니티 정보원을 출처로 한 경우가 전체 초상권 침해사례의 2/3(66.7%)를 차지함. 뿐만아니라통신비밀 침해유형의 경우 SNS·유튜브·온라인커뮤니티 정보원을 출처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90.9%)임  
 ⇒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그리고 온라인커뮤니티와 같은 인터넷공간에 있는 초상을 부정적인 맥락에서 비식별 처리 없이 사용한 경우가 초상권 침해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음을 시사

구분	피침해법의 유형(다중응답)						케이스 합계
	사생활비밀	통신비밀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SNS·유튜브·온라인 커뮤니티 정보원	39	20	60	18	3	8	113
그 외 정보원	25	2	30	27	0	8	75
합계	64	22	90	45	3	16	188



(2) 정보원별 프라이버시 침해양태

다. SNS·유튜브·온라인커뮤니티 정보원 여부별 피침해 인격영역상의 차이

- 사생활비밀 침해유형의 경우, 내밀영역 침해사례의 73.2% , 사사적 영역 침해사례의 61.1%가 SNS·유튜브·온라인커뮤니티 출처
- 통신비밀 침해유형의 경우, 내밀영역 침해사례의 100.0%, 사사적 영역 침해사례의 88.2%가 SNS·유튜브·온라인커뮤니티 출처  
 ⇒ SNS·유튜브·온라인커뮤니티를 정보원으로 하는 보도가 사생활의 비밀이나 통신비밀을 침해할 경우, 그 외 정보원을 출처로 하는 경우에 비해 인격의 내밀영역을 침해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음을 시사

구분	사생활비밀 피침해 인격영역 (다중응답)		통신비밀 피침해 인격영역 (다중응답)	
	내밀 영역공개	사사적 영역공개	내밀 영역공개	사사적 영역공개
SNS·유튜브·온라인 커뮤니티 정보원	30	22	10	15
그 외 정보원	11	14	0	2
합계	41	36	10	17



### 연구결과3 - 침해보도의 저널리즘적 특성에 따른 침해행위의 양태차이

#### (3) 피해자의 인적특성별 프라이버시 침해양태

##### 가. 인적특성별 피침해법익 유형상의 차이

- 초상권이나 성명권 침해유형의 경우 그 피해자가 모두 사인임
- 사생활비밀 침해유형의 경우는 공적인물과 사인이 같은 비중
- 통신비밀 침해유형은 공적인물이 피해자인 경우가 2배 이상 더 많음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유형의 경우 대부분(87.5%) 사인임

구분	피침해법익 유형(다중응답)						케이스 합계
	사생활 비밀	통신비밀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공적 인물	32	15	0	0	0	2	37
사인	32	7	90	45	3	14	151
합계	64	22	90	45	3	16	188

### 연구결과3 - 침해보도의 저널리즘적 특성에 따른 침해행위의 양태차이



#### (3) 피해자의 인적특성별 프라이버시 침해양태

##### 나. 인적특성별 피침해 인격영역상의 차이

- 피침해 인격영역 중 내밀영역의 경우 공적인물이 피해자인 경우가 사인인 경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통신비밀 침해로 내밀영역이 공개된 사례의 80.0%는 공적인물이 피해자인 경우임
- 한편 사생활비밀 침해로 내밀영역이 공개된 사례의 36.6%가 사인이 피해자라는 점은 주목을 요함

구분	사생활비밀 피침해 인격영역(다중응답)		통신비밀 피침해 인격영역(다중응답)	
	내밀 영역공개	사사적 영역공개	내밀 영역공개	사사적 영역공개
공적 인물	26	19	8	10
사인	15	17	2	7
합계	41	36	10	17



## I 연구결과 시사점 1

- 침해부분 정보원의 10건 중 6건이 SNS·유튜브·온라인커뮤니티를 출처로 하고 있음
- 특히 초상권 침해사례의 66.7%, 통신비밀 침해유형의 90.9%가 이들 정보원 출처

- ✓ 언론이 개인의 소셜미디어나 유튜브상의 인터넷개인방송, 또는 온라인커뮤니티와 같은 미디어들과의 ‘주목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이들의 의제를 광범위하게 차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
- ✓ 다른 정보원보다 이들 인터넷공간을 출처로 보도할 경우 초상권과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I 연구결과 시사점 2

- 침해보도의 행위속성에 선정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한 결과, 선정성이 있는 경우 사생활비밀이나 통신비밀 침해유형의 발생빈도 및 이들 유형에서의 내밀영역에 대한 침해의 발생빈도가 2~4배 이상 높게 나타남

- ✓ 언론인들이 인격권 침해의 주요원인의 하나로 지목한 ‘선정적이고 흥미위주의 보도’ 경향은 ‘사생활비밀’이나 ‘통신비밀’ 침해의 경우 타당한 지적이 될 수 있음을 확인
- ✓ 그러나 초상권이나 성명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경우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움을 알 수 있음



## I 연구결과 시사점 3

- 공직인물에 관한 사생활비밀 침해의 세부 유형 중 하나인 ‘사적영역 공개’로 인한 침해의 경우 인격영역 중 내밀영역에 대한 침해가 57.8%에 달함



- ✓ 성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성간의 성관계와 같은 사항 등 내밀영역에 속하는 사안은 비록 공직인물이라 하더라도 공개될 수 없음에 대한 언론의 인식제고 필요성 확인



## I 연구결과 시사점4

- 초상권 침해 유형의 구체적인 침해태양에 대한 분석결과 10건 중 4건의 경우 공직인물과 동석중인 사인 가족의 초상을 식별 내지 추지 가능하게끔 공개한 경우이며, 이중 미성년자가 상당수를 차지
- 한편, 침해가 인정된 초상의 97.8%는 사회적 평판저하 등 부정적 맥락에서 사용



- ✓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조각에 대한 언론의 이해 제고 필요성 제기



## I 연구결과 시사점5

- 프라이버시 침해보도 10건 중 8건 이상(81.9%)이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올라있는 개인의 사진이나 게시글을 그대로 갈무리하거나 동영상 링크를 통해 시각 내지 시청각적인 정보들을 관행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프라이버시 침해현상의 증가가 이용자들의 뉴스소비방식의 변화, 즉 ‘읽는 뉴스’에서 ‘보고 듣는 뉴스’ 선호 경향에 대한 인터넷신문의 대응, 즉 ‘시각 또는 시청각 정보 확대’ 방식의 대응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

## I 제언1 - 언론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억제 및 예방을 위한 개선방향



### ○ 프라이버시 침해 예방교육 강화 (※ 통계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 언론인 조사 및 2021 언론수용자 조사)

#### ✓ 교육의 필요성

-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심각하다는 언론인의 인식은 직전년도 대비 14.3%p 감소한 데 반해 프라이버시 침해관련 시정권고건수는 증가추세
- 성명권 및 초상권 침해의 경우 ‘선정·흥미위주 보도’ 경향과 관련성 부족  
⇒ 인격권, 특히 초상권이나 성명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법리 등에 대한 이해수준 제고 필요

#### ✓ 교육 내용 및 방식

- 인터넷신문에 의한 침해사례가 총 1,057건으로 91.6% 가장 많음  
이에 반해 인터넷언론사 소속 기자들의 교육참여 경험은 49.9%로 조사대상 중 가장 낮음
- ‘취재보도관련 윤리 및 법제’ (34.5%)에 대한 교육 선호도는 ‘취재보도와 관련한 전문지식’ (41.1%)과 ‘탐사보도 기법’ (38.9%)에 이어 세 번째  
⇒ 인터넷신문 대상 교육기회 확대 및 취재보도 기법 관련 교육 커리큘럼 동시 구성 필요



## 제언2 - 언론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억제 및 예방을 위한 개선방향

### ○ 인터넷공간에 대한 규제강화 필요성 검토

- ✓ 프라이버시 침해사례 상당부분은 언론이 SNS·유튜브·온라인커뮤니티상의제를 광범위하게 차용하는 것에서 비롯  
⇒ 언론의 모방·차용 동기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인터넷공간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

### ✓ 인터넷공간에 대한 자율 및 법적규제 현황

- 유튜브 정책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처럼 플랫폼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  
→ 사업자의 선의에 기반한 규제의 한계 및 사업자의 영리추구 목적에 따른 한계
- 포털업체들이 설립한 정책연합기구(KISO)에 의한 자율규제  
→ 유력 글로벌플랫폼사업자의 미참여 및 결정사항 미수용시 제재수단 부재에 따른 한계
-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제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 임시조치제도 남용 논란 및 정치적 중립성 논란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 강화를 독려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지속적 노력 필요  
사업자와 공공부문 간 협업을 통한 공동규제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검토

## 제언3 - 언론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억제 및 예방을 위한 개선방향



### ○ 시정권고 실효성 제고 - 권고결과의 활용도 제고

### ✓ 정부광고집행기준상 반영 비율 상향조정 및 반영 시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 검토

- 이미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 지표의 하나로 도입되어 있으나 반영여부 및 반영비율은 자율인 상황
-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침해로 인한 불이익이 실제로 더 클 수 있도록 현실화하고 실질화할 필요

### ✓ 포털의 뉴스제휴평가 시 정량지표의 하나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인터넷포털을 통한 뉴스 및 시사정보 소비는 35.9%, 뉴스이용 매체로서 인터넷포털의 지위가 공고한 상황  
뉴스제휴평가 시 정량지표의 하나로 위원회의 시정권고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 시정권고소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대언론 홍보 강화



○ 제도운영 차원의 개선과제

- ✓ 제도운영상의 절차적 투명성 제고
  - 시정권고 심의기준의 명확성 제고
  - 재심청구 절차에 대한 안내 강화로 방어권 보장

- ✓ 전문성 강화
  - 모니터링 및 심의단계에서의 역량 강화
  - 결정이유에 대한 설득력 제고



감사합니다!

